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제시 조기경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이도
❑ **대상품목** : 재해위험 14개 지구 조기경보 계측기 6종 176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2,409,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이도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제시 조기경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 · 공급사** : ㈜이도
❑ **대상품목** : 재해위험 14개 지구 조기경보 계측기 6종 176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2,409,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 · 공급사 : ㈜이도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제시 조기경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무한정보기술
❑ **대상품목** : 거제시 조기경보통합관리시스템(서버 및 응용 SW)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3,676,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무한정보기술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거제시 조기경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 · 공급사** : ㈜무한정보기술
❑ **대상품목** : 거제시 조기경보통합관리시스템(서버 및 응용 SW)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3,676,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 · 공급사 : ㈜무한정보기술 (인)